

담양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6. 10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담양군 내 공동선별,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유통시설 농업경영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“도농교류”의 정의 신설(안 제2조제9호)
- 나. “산지유통시설”의 정의 신설(안 제2조제10호)
- 다. 산지유통시설 농업경영체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(안 제7조의2 신설)

라. 기타 띄어쓰기 등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5. 6. 11 ~ 6. 15(5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 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5년 6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“도농교류”란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력 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·체험·휴양서비스·정보·문화 등의 교환·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.

10. “산지유통시설”이란 산지 농산물의 집하·선별·포장·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을 말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산지유통시설 농업경영체 지원) ① 군수는 공동선별, 공동출하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유통시설 농업경영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,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농산물 공동선별비, 포장재비 등 지원사업
2.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산지유통시설 농업경영체 육성사업
3. 산지유통시설 농업경영체의 원료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 사업

4. 농산물우수관리인증(GAP) 및 농산물이력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
사업

5. 그 밖에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
업

② 군은 산지유통시설 농업경영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원료매입 자
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제3호 중 “정부”를 “그 밖에 정부”로, “입어”를 “입어 군수가”로
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<u>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	제2조(정의) <u>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u>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9. “도농교류”란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력 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·체험·휴양서비스·정보·문화 등의 교환·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.
<u><신 설></u>	10. “산지유통시설”이란 산지 농산물의 집하·선별·포장·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을 말한다.
<u><신 설></u>	제7조의2(산지유통시설 농업경영체 지원) ① 군수는 공동선별,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유통시설 농업경영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,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	1. 농산물 공동선별비, 포장재비

	<u>등 지원사업</u> <u>2.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산지유통시설 농업경영체 육성사업</u> <u>3. 산지유통시설 농업경영체의 원료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 사업</u> <u>4. 농산물우수관리인증(GAP) 및 농산물이력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</u> <u>5. 그 밖에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 <u>② 군은 산지유통시설 농업경영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원료매입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
제10조(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)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, 농산물,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. 1. · 2. (생 략) 3. <u>정부</u> 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	제10조(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그 밖에 정부</u> -----

되는 농업재해 또는 기상이변 등의 재해를 <u>입어</u> 지원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----- ----- <u>입어</u> 군수가 ----- -----
--	--